



교육부

수신 고등교육기관전체
(경유)

제목 「동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건)에 대한 검토의견 조
회

1. 관련: 규제개혁법무담당관-8286(2019. 9. 10.)
2. 국회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동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의견을
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'19. 11. 5.(화)까지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공문 제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)

◎ 개정 주요내용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주요내용
22178	한정애	'19.8.28.	사육동물 복지 증진, 동물실험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
22190	한정애	'19.8.29.	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,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 협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고, 일정한 경우 실험동물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함

- 붙임 1. 2022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.
2. 20221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.
3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주무관 기안10/29 서기관 검토10/29 학술진흥과장 전결10/29
이래람 최현석 윤소영

협조자

시행 학술진흥과-6757 (2019-10-29) 접수 상명-2019-10530 (2019-10-30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번호 044-203-6536 팩스번호 044-203-6490 / lailight@korea.kr / 공개